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북문화재단 —

2025. 7.

□ 처분요구일람표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 미준수 (주의)	1
2.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시정)	3
3.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시정)	5
4. 지급명령 승인 절차 누락 등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	8
5. 출장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13
6. 기부금품 모집 규정 부적정 (시정)	15
7.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17
8. 청사청소 용역 사회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시정)	19
9. 한복진흥원 융복합산업관 입주관리 규정 정비 소홀 (시정)	21
10.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주의)	24
11. 사업범위를 벗어난 농업법인의 영업활동(통보)	26
12.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주의)	29
13.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33
14. 분할발주 등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36
15.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40
16. 2025년 매장유산 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부적정 (주의)	44
17. 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적정 (주의)	47
1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49
19.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5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 미준수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에서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출장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임차차량 등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내지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 제출 대상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대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100퍼센트¹⁾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임차하도록 되어 있다.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승용자동차인 경우 전기차 1.5, 수소차 2.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text{구매·임차 실적(\%)} = \frac{\sum(\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times \text{환산비율})}{\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 \times 100$$

또한 같은 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경북문화재단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6대 이상²⁾이면서 새로 자동차를 구매·임차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용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3년 자동차 3대를 새로 임차하면서 전기차량 1대, 휘발유 차량 2대를 임차하였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용(100퍼센트)이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2024. 4. 29. 환경부³⁾로부터 과태료(1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⁴⁾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은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기준, 사용차량 6대 보유

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1317(2024. 4. 29.)

4) 의견제출 기한(2024. 5. 13.) 내 자진 납부(2024. 5. 7.)하여 20% 경감받은 80만원 납부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에서는 신규 및 경력직 채용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상시고용⁵⁾하는 근로자의 총수의 일정 비율⁶⁾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5) 매월 16일 이상 고용하는 근로자

6) (2022. 1. 1. ~ 2023. 12. 31.) 3.6%, (2024. 1월 이후) 3.8%

한편 2023. 5. 1. 경북문화재단은 경북콘텐츠진흥원과 통합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게 되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기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기관통합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⁷⁾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 명, 원)

구분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률 (인원 ⁸⁾)	장애인 고용인원			의무고용 미달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⁹⁾
			계 (중증특례 적용)	중증	경증		
2024년 (2023년귀속)	116	3.6 (4)	1 (1)	-	1	3 (0.86)	31,377,170
2025년 (2024년귀속)	134	3.8 (5)	3 (4)	1	2	1 (2.99)	28,605,370

그 결과 장애인이 의무고용 비율만큼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부담금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7) 경북문화재단에서는 2022. 2. 4. 장애인 1명, 2023. 2. 9. 장애인 1명을 각각 채용하기 위해 통합채용기관인 경상북도로 채용의뢰를 하였으나 채용적격자가 없었고, 2023. 9. 8. 장애인 3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 하였으며, 2024. 5. 20. 장애인 3명을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3명을 선발하였으나 1명이 임용을 포기하여 최종 2명(중증 1, 경증 1)을 채용하였으며, 2025. 6. 30. 장애인 1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하고 응시원수를 접수 중임

8)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그 인원은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

9) 부담금 전액 일시납부로 감면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승진 및 보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예고제 운영 미흡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인사요인(결원), 인사발령일 등 소속 직원의 승진, 이동 등 주요 인사계획을 포함하여 인사운용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직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방향 및 기준, 인사요인(결원) 등이 포함된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인사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2.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정직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원의 그 기간동안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북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8조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강등, 정직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3. 징계 기준 양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Ⅳ-②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북문화재단에서는 「인사규정」 제49조 및 「징계규칙」 제10조에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기관 「인사규정」 등을 점검한 결과 성비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처벌기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처벌기준), 채용비위자(정규직 전환 처벌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5배 가산 징수 및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다르게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시고, 강등 등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시는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성비위 관련 등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급명령 승인 절차 누락 등 지출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각 회계관직에 따른 사무를 위임하고 부여된 회계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재무관은 지출 원인행위, 지출원은 지출명령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원의 경우 경영기획본부장과 재무회계팀장을 각각 재무관과 지출원으로 지정하고 있고, 한복진흥원의 경우 한복원장과 한복연구팀장을 각각 재무관과 지출원으로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6조, 제37조,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재무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출원은 지급명령에 의한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부재 시에 지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로부터 부재기간 동안 회계관직의 일시변경을 득하여 변경된 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책임 하에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지출원의 책임 하에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심사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서를 재단금고에 송부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라는 재단 금고가 아닌 전산 시스템을 통한 예탁기관 계좌¹⁰⁾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출원의 지급명령행위가 생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붙임 1, 2] 와 같이 재무관 및 지출원이 병가 및 휴가 등으로 인해 부재 중인데도 회계관직의 변경없이 부적정하게 대리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통한 지출을 한 사실이 있고,

일반적인 지출 시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서를 갈음하는 수기 전표를 작성하여 재단 금고에 송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지출 시에는 지출원의 지급명령행위 절차 없이 지출업무 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정당한 채주 여부를 점검한 후 지출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지출원이 아닌 지출업무 담당 직원이 지급명령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출원, 재무관 등 회계관직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 지출 등 회계업무가 이루어지고 회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1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 프로세스는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보조사업의 건별 집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시스템에 증빙을 등록 및 검증 후 실시간 건별 집행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지출원 등이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일 때에는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등으로 지출 등 회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국고보조금 지출업무 시에도 회계관직의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1]

재무관 부재 시 지출원인행위 현황

“지출원인행위 현황 비공개”

[붙임 2]

지출원 부재 시 지급명령 현황

“지급명령 현황 비공개”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출장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경상북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출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재단 「복무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수행 시에만 출장을 허용하고 있고, 재단 「해외 출장 운영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재단 임직원의 “업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한” 해외 출장의 심사 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소속 임직원의 해외 출장 시에 입국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여유 있게 책정하여 명령하였더라도 업무 수행 후 예정된 출장 기간보다 복귀가 조기에 완료된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변경하여 근무지에 복귀하여야 하고, 근무지 복귀가 24:00를 넘겼다고 해서 해당 일을 출장처리하거나 휴식을 목적으로 출장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 ○○○○○에서는 소속 직원 AAA, BBB이 2024. 8. 28. ~ 2024. 9. 3. 기간 동안 해외 출장 명령을 득하여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2024. 9. 2. 22:25 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2024. 9. 3. 새벽경¹¹⁾ 근무지 소재지인 예천으로 복귀하였는데도 당초 출장명령을 변경하지 않고, 24:00를 넘어 복귀했다는 사유만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음에도 2024. 9. 3.을 출장기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소속 직원 CCC이 2024. 11. 18. ~ 2024. 11. 22. 기간 동안 해외 출장 명령을 득하여 해외출장 업무 수행 후 2024. 11. 21. 17:20 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 전에는 충분히 근무지 복귀가 가능하였는데도 개인사정으로 지인 차량을 이용해 다음날 12:00경 근무지 소재지인 예천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당초 출장명령을 변경하지 않고 24:00를 넘어 복귀했다는 사유만으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2024. 11. 22.을 출장기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업무수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출장이 처리되었고 직원 복무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간으로 출장 승인을 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1) 하이패스 영수증 상 출장자 AAA의 자차 차량이 2024.9.3. 03:59경 한국도로공사 영주영업소로 진출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부금품 모집 규정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이라는 재단 목적, 그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자체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인 재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단 ○○○○○○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단 「정관」 제27조에서 재단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도 각각 “공개적인 기부금 모집사업에 의한 기부금품 양식 및 기부신청 절차 가능”하다는 규정 및 “홍보를 통한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신청절차가 가능”하다는 규정 등 기부금품법에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재단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 및 기부금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부금품법에 맞게 재단 「정관」을 개정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적협동조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2024. 7. 22. □□□□□□ 경연대회 행사
대행 용역(계약금액 : 41,850,000원)을 ‘AAA’과 2024. 8. 13. 2024 □□□□□□
운영 용역(계약금액 : 41,400,000원)을 ‘BBB’과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북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5장 제2절에 따르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용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
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표 3]에 따르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용역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AAA’, ‘BBB’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사실만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¹²⁾

그 결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요건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CCC은 훈계 처분, DDD은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2)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AAA, BBB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사청소 용역 사회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AAA과 청사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표1] 청사청소 용역 계약 내역

(단위 : 원)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2023. 1. 1.	AAA	47,724,000	2023. 1. 1. ~ 2023. 12.31.
2023. 12. 29.	AAA	48,912,000	2024. 1. 1. ~ 2024. 12. 31.

경북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제4호 나목 및 제5장 제7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청사청소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실제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내역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원가계산서의 해당 보험료보다 작게 집행되어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표2] 청사청소 용역 보험료 미정산 금액

(단위 : 원)

연도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일반관리비 13)	이윤 ¹⁴⁾	부가가치세
합계	1,941,000	1,524,990	2,770	76,380	160,410	176,450
2023년	961,850	757,070	-	37,850	79,490	87,440
2024년	979,150	767,920	2,770	38,530	80,920	89,010

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이 누락되어 용역비 총 1,941,0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정산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등 1,941,000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3) (인건비+경비)*5%

1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한복진흥원 융복합산업관 입주관리 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한복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융복합산업관을 한복 분야 관련 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다.

[표1] 융복합산업관 입주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업종	입주기간	층별	입주실	임대면적 (㎡)
1	AAA	전통섬유, 복식 제작	2025.4.14. ~2027.4.13.	1층	연구실	100
2	BBB	한복제작 및 대여	2025.4.14.~2027.4.13.	2층	연구실-2	99.9
3	CCC	전통명주 생산	2025.4.14.~2027.4.13.	2층	교육지원실	100
4	DDD	한복문화콘텐츠 제작	2024.11.14.~2026.11.13.	2층	실험실/창고	126.07
5	EEE	누비옷 제작	2024.11.14.~2026.11.13.	2층	연구실-1	90.8
6	FFF	한복 대여	2024.11.1.~2026.11.13.	1층	디자인실	85.71
7	GGG	천연염색 원단 및 제품 생산	2024.11.14.~2026.11.13.	1층	디자인실	179.71
8	HHH	전통의류 및 소품 제작	2024.4.1.~2026.3.31.	1층	전문가실 내 전문가휴게실	24.9
9	III	생활한복 디자인 및 제작	2024.4.1.~2026.3.31.	1층	전문가실	65.8
10	JJJ	천연염색 원단 및 한복제작	2024.4.1.~2026.3.31.	1층	샘플생산실	132.81

위 부서에서는 용복합산업관 입주기업 심사,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간, 임대료 징수 등을 위해 「한국한복진흥원 입주기업지원 등 관리지침」을 2022. 8. (날짜 미상)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입주기업 관리 등 용복합산업관 운영에 필요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한복진흥원 입주기업지원 등 관리지침」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표2] 관리지침 및 운영 사항

조문	내용	미비 사항	비고
제4조의1(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전체 인원수 미규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실무자, 팀장이 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13조(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 임대료 산정	- 2년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산출된 임대료 적용 기간, 임대료 납부시기 등 미규정 - 입주계약서 상 연간사용료 재산정 미규정, 임대료 납부 시기 및 연체료 등 미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 연간사용료를 산정하여 매년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대부 또는 사용전에 미리 납부
제14조(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관리)	- 별도 규정을 마련토록 명시	- 관련 규정 없음	
별지 서식	- 입주신청서 등 규정	- 입주기업 관리대장 미규정	
부칙 1조	- 한복진흥원장 승인으로 지침 시행	- 기관통합에 따른 전결권 등에 따라 조정	- 경북문화재단 「자산 및 물품관리 규정」 제53조 · 기존재산의 임대 등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시행
미규정		- 입주기업의 양도 및 목적외 사용 등 점검 미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 결과 입주기업 심사, 임대료 부과·징수, 입주기업 관리 등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입주기업심사, 임대료 부과·징수, 입주기업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지원 등 관리지침」을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를 구매하여 입주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¹⁵⁾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도 출연기관은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감사관에서는 도본청 실·과·담당관, 도 직속기관, 지역본부 및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도 합의회 행정기관, 시·군, 도 지방공기업, 도 출연기관이 요청한 계약원가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도 출연기관에서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원가심사 담당부서인 경상북도 감사관

15)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 구매·제조하려는 물품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경북 ○○○○○○에 설치하기 위한 ‘□□□□□□ 구매’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2021. 6. 4. 농업회사법인 AAA과 계약(계약금액 : 162,000천 원)하면서 계약원가심사를 받지 않고 구매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21. 6. 4.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기간 동안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물품구매 계약 총 3건 계약원가심사를 경상북도 감사관에게 요청하지 않고 구매하였다.

[표] 계약원가심사 미 실시 물품구매 내역

(단위 : 천 원)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업체	구매방법
3개 사업	-	696,100	-	
□□□□□□ 구입	2021. 6. 4.	162,000	AAA	나라장터 입찰
□□□□□□ 구매 및 설치	2021. 6. 21.	20,100	BBB	1인견적 수의
□□□□□□ 구매 설치	2021. 7. 23.	514,000	CCC	나라장터 입찰

그 결과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2천 만 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계약원가심사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및 통 보

제 목 사업범위를 벗어난 농업법인의 영업활동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2021. 6. 4. 농업회사법인 AAA과 ‘□□□□□□ 구입’을 계약(계약금액 : 162,000천 원)하고 태블릿 PC 등 웹툰 관련 6종, 125개 창작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서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 및 농업관련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 및 농업관련 부대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에서는 2021. 5. 3. 경북 ○○○○○○에 사용되는 창작장비 6종 125개(165,378천 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1. 5. 12. 입찰공고 한 후 같은 해 5. 21. 개찰을 통하여 162,000천 원을 투찰한 농업회사법인 AAA(경상북도 ○○시 ○○면 소재)을 낙찰 1순위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웹툰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고 2021. 6. 23. 물품검수 완료하였다.

[표] ○○○○○○ 창작장비 구입 내역

물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구입금액(원)	납품장소
6종		125		162,000,000	
액정태블릿(DTK-2420)	대	16	2,520,000	40,320,000	○○○○○○○
액정태블릿(DTK-2260)	대	15	1,180,000	17,700,000	
액정태블릿전용PC(DPM-W1000L))	대	15	2,950,000	44,250,000	
태블릿스탠드(액세서리)	대	16	598,750	9,580,000	
태블릿PC(DTH-W1321)	대	16	2,400,000	38,400,000	
소프트웨어(클립스튜디오 EX)	식	47	250,000	11,750,000	

그런데 위 부서에서 웹툰장비 등을 구입한 농업회사법인 AAA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 및 농업관련 부대사업 등만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태블릿 PC와 소프트웨어 공급 등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하는데도 위 농업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한편 2025. 6. 12. 감사일 현재 위 농업회사법인 AAA의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1. 5. 12. ‘□□□□□□ 구입’ 입찰공고 당시 ○○○○○○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한 소프트웨어사업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동산 개발·임대업,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골재채취 및 판매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AAA이 웹툰장비를 납품하고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입찰참가자의 참여자격 또는 사업범위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AA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해당 시로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재난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일 때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되,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운영’, ‘제16회 경상북도 □□□□□□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재공고 유찰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단독 응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였어야 하는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표1] 유찰 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 운영	2023-05-22	AAA	69	재공고 유찰
제16회 경상북도 □□□□□□ 운영	2023-06-14	BBB	96	행정안전부 고시 ¹⁶⁾ 단독 응찰

※ ○○○○○○ 제출자료 재구성

16)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7호, 2023.1.1. 시행)에 따라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그 결과 입찰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검토 없이 AAA 등 2개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모집인원은 구성되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모집인원은 구성되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5개 계약 건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예규와 다르게 3 ~ 6명으로만 구성하였고, 특히 2개 계약은 제안서 평가위원 인원도 3명, 9명으로만 모집한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약명	계약금액	평가일	모집인원	평가인원
□□□□□□ 대행용역	94	2021-08-24	3	3
경북□□□□□□ 기념행사 운영	95	2021-11-01	9	3
2022 경북□□□□□□ 공모대전	89	2022-05-13	21	6
경북□□□□□□ 지원프로그램	71	2022-06-09	21	6
2024 경북□□□□□□ 공모대전	88	2024-04-04	21	5

※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저해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및 구성을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시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가 등을 통해 협상적격자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CCC은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사를 준공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¹⁾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1) 「지방계약법」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기간을 정함

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를 준공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 완료 시에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도중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실시하는 등 준공 후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사 준공 후 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표]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 금액	하자 보증금	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				최종 검사
				2021	2022	2023	2024	
□□□□□□ 공사(환경개선 공사)	349,946	10,498	'21.5.27~ '24.5.26	-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미실시
경북 □□□□□□ 통신공사	30,981	620	'21.8.20~ '22.8.19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 전기 공사	47,419	948	'21.8.20~ '22.8.19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건축음향 공사	640,244	12,805	'21.8.20~ '22.8.19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리모델링(전기) 공사	646,083	19,382	'21.10.28~ '22.10.27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리모델링(건축,기계) 공사	1,665,889	49,977	'21.10.29~ '22.10.28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리모델링(통신) 공사	282,419	8,473	'21.10.29~ '22.10.28	- 미실시	미실시 -	-	-	미실시
경북□□□□□□ 리모델링(소방) 공사	194,802	5,844	'21.10.29~ '24.10.28	-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미실시
경북□□□□□□ 옥상 방수 및 조경 보수공사	169,840	5,095	'23.9.13~ '26.9.12	-	-	-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하자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졌고,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보수를 위해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발주 등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용역사업 분리 발주 부적정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⑨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및 II-④ 사업비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용역 사업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 유지·강화사업’ 관련 출판물을 제작하는 ‘□□□□□□ 창작과정 결과물 출판콘텐츠 제작’과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 창작과정 결과물 오디오북 제작 및 송출’이 동일한 업종에서 추진할 수 있고,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2022. 7. 13., 2022. 9. 21. 동일한 업체와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분할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계약자 (대표)	계약 방식
2022 □□□□□□ 창작과정 결과물 출판콘텐츠 제작	19,890	2022.07.13.	2022.07.13. ~ 2022.10.10.	AAA (***)	1인견적
2022 □□□□□□ 창작과정 결과물 오디오북 제작 및 송출	11,890	2022.09.21.	2022.09.21. ~ 2022.11.10.		1인견적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수의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다수의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상실하게 되었다.

2. 전문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 출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④ 사업비에

따르면 공사, 용역 등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 계약은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공사에정금액이 21,000천 원인 ‘□□□□□ 조성공사’를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BBB와 2021. 2. 25.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전문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예정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보유면허	필요전문면허
□□□□ □□ 조성공사	19,792 (21,000)	2021.2.25.	2021.02.25. 2021.03.05.	BBB	-	실내건축공사업

그 결과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무자격자가 해당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고, 정당한 자격 보유 업체들의 계약 기회가 상실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사업은 일괄 발주하시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CCC, DDD은 훈계 처분하시고, EEE, FFF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경북문화재단 ○○○○○○에서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예산 집행기준, ②경비, 가. 일반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예산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나. 세부 집행 요령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9) 행사·홍보비에서는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홍보비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유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2.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비, 간행물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한하며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내방객 홍보물품 및 행사관련 기념품(특산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 기념품(특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기입하는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0. 11월부터 2025. 6월 감사일 현재 까지 내방객 지급,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에 사용할 기념품등을 총 22회(89,316천 원)에 걸쳐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이 아닌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그 중 7건은 지급배부대장 작성을 누락하는 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예산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사무관리비가 집행 되었고,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 등이 관리대장을 통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아 분실 또는 사적 사용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지출 및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 등은 관리대장 작성을 통해 그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기념품 등 내역

“기념품 구입 내역 비공개”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25년 매장유산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법규 및 지침,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발굴조사기관, 육상지표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1] 조사기관별 조사요원 구분 현황

연번	구분	조사요원 구분
1	육상발굴조사기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
2	육상지표조사기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3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4	수중발굴조사기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

그리고 재단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 사유 발생시 해당 부서장은 고용 예정인원, 고용사유, 부여할 업무,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인사부서에 채용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서 담당부서인 조사연구실에서 매 시기별 매장유산 조사 및 보존처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요원별 응시자격기준 등을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략연구실에서는 해당 계획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서 그에 따른 조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채용공고는 조사요원별로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해당분야 자격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5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매장유산 조사 및 보존처리 관련 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계획(○○○○○-**, 2025. 1. 8)을 수립하면서 관련 법률에는 매장유산 조사 범주에 해당하는 ‘보조원’과 보존처리 범주에 해당하는 ‘보존과학연구원’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조원’과 ‘보존과학연구원’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3명 모두 ‘보조원’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하였고, 2025. 1. 24. 채용공고를 진행하여 같은 해 2. 14. 보조원 2명, 보존처리 1명을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표2] 2025년 매장유산 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채용규모 (내부결재)	자격구분없이 채용공고 진행 (자격요건 : 1개 이상 충족)	채용결과 (3명)	비 고 (보존과학연구원 자격기준)
- 인원 : 3명 - 매장유산 조사 - 보존처리	- 문화유산 <u>관련학과</u>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u>매장유산</u>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u>매장유산</u>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보조원 (2명) - 보존처리 (1명)	- 보존 <u>관련학과</u>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u>보존처리 실무경력</u>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수리기능자(<u>보존처리공을 말한다</u>) 이상의 <u>자격증</u>을 소지한 사람일 것

그 결과 보존처리분야와 관련된 ‘보존과학연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보존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① 앞으로 매장유산 유산 및 보존처리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채용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사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관 청사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청사 운영 등을 위한 제습기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연도 세출예산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제습기 구입

등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후 당해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4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산취득비 항목에 드론,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컴퓨터, 무선마이크 등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어 제습기의 경우에도 자산취득비 항목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에도 아래 [표]와 같이 자산취득비 항목에 편성되지 않아 구입할 수 없었던 제습기 총 3대를 2024. 10. 15, 2024. 11. 4. 총 2회에 걸쳐 수선유지비 항목을 이용하여 구매 후 별도의 물품등록 절차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표] 수선유지비로 제습기 구입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입일	구입항목	구입금액	예산과목	물품등록	비고
1	2024. 10. 15	제습기(1대) (제품명 : ***-***)	1,925,000	수선유지비	미등록	설치비 포함
2	2024. 11. 04	제습기(2대) (제품명 : ***-***)	4,070,000	수선유지비	미등록	설치비 포함

그 결과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로 인해 관리되어야 할 물품인 제습기가 별도의 물품등록 절차 없이 사용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의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V. 예산 집행기준 ②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③ 업무추진비(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현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따르면 축의·부의 금품은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 에 의한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도 그 가액 범위를 10만 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에는 소속 상근직원, 지방의회 의원, 유관기관의 임직원 해당 여부 및 경조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하여 관련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4. 5. 20. 경조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북문화재단 ○○○○○○ AAA 사망 관련 조의금으로 가액 범위를 초과한 현금 5만 원과 함께 근조화환 구입 비용 1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축의·부의 금품 지급대상자 범위를 벗어난 자에게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 지급대상 및 가액 범위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문화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관련법규 및 지침,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71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과 제5호 라목에 따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질의회신(회제41301-949, '03. 8. 22.)에 따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1인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의미는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했어야만 하며,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심화연구'용역을 관련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 측면의 검토 및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해당 업체가 관련 주제의 전문가라는 사유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단순 서비스·출판업(연구 및 개발업, 학술서적출판업)을 하고 있는 AAA와 2024. 7. 1.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계약금액 : 40,5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상실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수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학술용역은
경쟁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